|  |  |  |
| --- | --- | --- |
| **국가자주혁신시범구의 조세시범정책을 전국에서 확대실시할 것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  재세[2015]116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의 재정청(국)·국가세무국·지방세무국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국무원 상무회의 결정의 취지에 근거하여 국가자주혁신시범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네개의 소득세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관련 조세정책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유한(有限)합명제 벤처기업 법인파트너의 기업소득세 정책 관련  (1) 2015년 10월 1일부터, 전국 범위내의 유한(有限)합명제 벤처기업이 지분투자의 방식으로 장외 중소형 고신기술기업에 투자한지 2년(24개월)이 경과된 경우, 해당 유한(有限)합명제 벤처기업의 법인파트너가 장외 중소형 고신기술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70%를 당해 법인파트너가 유한(有限)합명제 벤처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에 전액 공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이후 납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2) 유한(有限)합명제 벤처기업의 법인파트너가 장외 중소형 고신기술기업에 투자하지 아니한 경우, 유한(有限)합명제 벤처기업이 중소형 고신기술기업에 투자한 금액과 법인파트너가 합명계약의 약정에 따라 유한(有限)합명제 벤처기업에 출자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2. 기술양도소득의 기업소득세 정책 관련  (1) 2015년 10월 1일부터, 전국 범위내의 거주민기업이 5년 이상의 비전용실시권 부여를 통해 취득한 기술양도소득은 기업소득세 혜택을 누리는 기술양도소득에 해당된다. 거주민기업의 연간 기술양도소득 중 500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며; 500만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반감(半減)징수한다.  (2) 이 통지에서 기술이라 함은 특허(국방특허 포함),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직접회로배치설계권, 식물신품종권, 생물의약 신품종 및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 기타 기술을 포함한다. 그 중에서 특허라 함은 법률에 의해 독점권을 부여받은 발명, 실용신안 및 물품의 도안과 외관에 대한 단순한 변경이 아닌 물품의 외관에 대한 디자인을 지칭한다.  3. 기업의 미배분이윤·잉여공적금·자본공적금을 자본금으로 전환 시의 개인소득세 정책 관련  (1) 2016년 1월 1일부터, 전국 범위내의 중소형 고신기술기업이 미배분이윤·잉여공적금·자본공적금을 개인주주의 출자금으로 전환함에 있어 개인주주가 개인소득세를 일회에 완납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실제 사정에 근거하여 스스로 정한 분할납부계획에 따라 5년(양력연도) 내(5년 포함)에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2) 미배분이윤·잉여공적금·자본공적금으로부터 전환되는 개인주주의 출자금은 '금리·주식이자·이익배당금소득' 항목으로 간주하여 20%의 세율로 개인소득세를 과세한다.  (3) 지분양도에 따른 주주의 현금소득은 미납세금을 납부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4) 주주가 해당 지분을 양도하기 전에 기업이 법에 의거하여 파산을 선고하였고, 주주의 해당 권익 처분에 수익 또는 자산의 취득이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취득한 수익과 자산이 초기투자액보다 적은 경우, 관할 세무기관은 그가 납부하지 아니한 개인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5) 이 통지에서 중소형 고신기술기업이라 함은, 중국 경내에서 설립등기를 이행하였고 장부근거징수제를 적용받으며 고신기술기업 자격을 획득하였고 매출액과 자산총액 모두 2억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종업원 수가 5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6) 상장한 중소형 고신기술기업 또는 전국 중소형기업 지분 매각 시스템에 등록된 중소형 고신기술기업이 미배분이윤·잉여공적금·자본공적금을 개인주주의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주주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고 계속해서 주식이자·이익배당금의 개인소득세 차별화 정책에 따라 집행하며 이 통지에 규정한 분할납부 정책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4. 지분 인센티브의 개인소득세 정책 관련  (1) 2016년 1월 1일부터, 전국 범위내의 고신기술기업이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에 따라 본 기업의 관련 기술인력에게 지급하는 지분 인센티브에 대해 지급대상자가 개인소득세를 일회에 완납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실제 사정에 근거하여 스스로 정한 분할납부계획에 따라 5년(양력연도) 내(5년 포함)에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2) 개인이 지급받은 지분 인센티브는 '임금·급여소득' 항목으로 간주하여 <개인이 지급받은 스톡옵션의 개인소득세 문제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5]35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액을 산정한다. 지분 인센티브의 과세가격은 지분 취득 시의 공정한 시장가격을 참조하여 확정한다.  (3) 기술인력이 인센티브로 지급받은 지분(주식배당, 주식전환 포함)을 매각함으로 인해 발생한 현금소득은 미납세금을 납부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4) 기술인력이 해당 지분을 양도하기 전에 기업이 법에 의거하여 파산을 선고하였고, 기술인력의 해당 권익 처분에 수익 또는 자산의 취득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취득한 수익과 자산이 해당 지분의 취득에 따른 개인소득세의 미납분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관할 세무기관은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이 통지에서 관련 기술인력이라 함은, 기업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하에 지분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다음 두가지 유형의 인력을 지칭한다.  ① 기업의 과학기술성과의 연구개발과 산업화에 대한 기여도가 뛰어난 기술인력. 기업의 핵심적인 직무기술성과의 주요 완성자, 중대 개발 프로젝트의 책임자, 핵심제품 또는 핵심기술·제조공정의 중대한 혁신 또는 개량을 이루어낸 주요 기술인력을 포함한다.  ② 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뛰어난 경영관리인력. 기업의 생산경영업무를 총괄하는 고위층 관리인력, 주영업활동 수입(또는 주영업활동 이윤)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주요 제품(서비스)의 생산경영을 책임지는 중간층·고위층 경영관리인력을 포함한다.  기업이 직원 전원에게 지급하는 지분 인센티브의 경우, 이 통지에 규정한 조세정책에 따라 집행할 수 없다.  (6) 이 통지에서 지분 인센티브라 함은, 기업이 기술인력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일정 수량의 지분 또는 주식을 지칭한다.  (7) 이 통지에서 고신기술기업이라 함은, 장부근거징수제를 적용받으며 성급 고신기업인정관리기구의 인정을 거친 고신기술기업을 지칭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5년 10월 23일 |  | **财政部、国家税务总局**  **关于将国家自主创新示范区有关税收试点政策推广到全国范围实施的通知**  财税〔2015〕116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  　　根据国务院常务会议决定精神，将国家自主创新示范区试点的四项所得税政策推广至全国范围实施。现就有关税收政策问题明确如下：  　　一、关于有限合伙制创业投资企业法人合伙人企业所得税政策  　　1.自2015年10月1日起，全国范围内的有限合伙制创业投资企业采取股权投资方式投资于未上市的中小高新技术企业满2年（24个月）的，该有限合伙制创业投资企业的法人合伙人可按照其对未上市中小高新技术企业投资额的70%抵扣该法人合伙人从该有限合伙制创业投资企业分得的应纳税所得额，当年不足抵扣的，可以在以后纳税年度结转抵扣。  　　2.有限合伙制创业投资企业的法人合伙人对未上市中小高新技术企业的投资额，按照有限合伙制创业投资企业对中小高新技术企业的投资额和合伙协议约定的法人合伙人占有限合伙制创业投资企业的出资比例计算确定。  　　二、关于技术转让所得企业所得税政策  　　1.自2015年10月1日起，全国范围内的居民企业转让5年以上非独占许可使用权取得的技术转让所得，纳入享受企业所得税优惠的技术转让所得范围。居民企业的年度技术转让所得不超过500万元的部分，免征企业所得税；超过500万元的部分，减半征收企业所得税。  　　2.本通知所称技术，包括专利（含国防专利）、计算机软件著作权、集成电路布图设计专有权、植物新品种权、生物医药新品种，以及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确定的其他技术。其中，专利是指法律授予独占权的发明、实用新型以及非简单改变产品图案和形状的外观设计。  　　三、关于企业转增股本个人所得税政策  　　1.自2016年1月1日起，全国范围内的中小高新技术企业以未分配利润、盈余公积、资本公积向个人股东转增股本时，个人股东一次缴纳个人所得税确有困难的，可根据实际情况自行制定分期缴税计划，在不超过5个公历年度内（含）分期缴纳，并将有关资料报主管税务机关备案。  　　2.个人股东获得转增的股本，应按照“利息、股息、红利所得”项目，适用20%税率征收个人所得税。  　　3.股东转让股权并取得现金收入的，该现金收入应优先用于缴纳尚未缴清的税款。  　　4.在股东转让该部分股权之前，企业依法宣告破产，股东进行相关权益处置后没有取得收益或收益小于初始投资额的，主管税务机关对其尚未缴纳的个人所得税可不予追征。  　　5.本通知所称中小高新技术企业，是指注册在中国境内实行查账征收的、经认定取得高新技术企业资格，且年销售额和资产总额均不超过2亿元、从业人数不超过500人的企业。  　　6.上市中小高新技术企业或在全国中小企业股份转让系统挂牌的中小高新技术企业向个人股东转增股本，股东应纳的个人所得税，继续按照现行有关股息红利差别化个人所得税政策执行，不适用本通知规定的分期纳税政策。  　　四、关于股权奖励个人所得税政策  　　1.自2016年1月1日起，全国范围内的高新技术企业转化科技成果，给予本企业相关技术人员的股权奖励，个人一次缴纳税款有困难的，可根据实际情况自行制定分期缴税计划，在不超过5个公历年度内（含）分期缴纳，并将有关资料报主管税务机关备案。  　　2.个人获得股权奖励时，按照“工资薪金所得”项目，参照《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个人股票期权所得征收个人所得税问题的通知》（财税〔2005〕35号）有关规定计算确定应纳税额。股权奖励的计税价格参照获得股权时的公平市场价格确定。  　　3.技术人员转让奖励的股权（含奖励股权孳生的送、转股）并取得现金收入的，该现金收入应优先用于缴纳尚未缴清的税款。  　　4.技术人员在转让奖励的股权之前企业依法宣告破产，技术人员进行相关权益处置后没有取得收益或资产，或取得的收益和资产不足以缴纳其取得股权尚未缴纳的应纳税款的部分，税务机关可不予追征。  　　5.本通知所称相关技术人员，是指经公司董事会和股东大会决议批准获得股权奖励的以下两类人员：  　　（1）对企业科技成果研发和产业化作出突出贡献的技术人员，包括企业内关键职务科技成果的主要完成人、重大开发项目的负责人、对主导产品或者核心技术、工艺流程作出重大创新或者改进的主要技术人员。  　　（2）对企业发展作出突出贡献的经营管理人员，包括主持企业全面生产经营工作的高级管理人员，负责企业主要产品（服务）生产经营合计占主营业务收入（或者主营业务利润）50%以上的中、高级经营管理人员。  　　企业面向全体员工实施的股权奖励，不得按本通知规定的税收政策执行。  　　6.本通知所称股权奖励，是指企业无偿授予相关技术人员一定份额的股权或一定数量的股份。  　　7.本通知所称高新技术企业，是指实行查账征收、经省级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机构认定的高新技术企业。  财政部  国家税务总局  2015年10月23日 |